

(제11-1-2호)

### 유상증자 결정

1. 신주의 종류와 수	보통주식 (주)	17 주
	기타주식 (주)	-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		100원
3. 증자전 발행주식총 수 (주)	보통주식 (주)	61,289,983 주
	기타주식 (주)	2 주
4. 자금조달의 목적	시설자금 (원)	-
	운영자금 (원)	1,700원
	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	-
	기타자금 (원)	-
5. 증자방식		제3자배정증자
6. 신주 발행가액	보통주식 (원)	100원
	기타주식 (원)	-
7.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(%)		0%
8.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		제9조 제3항
9. 납입일		2019년 6월 18일
10. 신주의 배당기산일		직전 영업연도 말
11. 신주권 교부예정일		2019년 6월 18일
12. 신주의 상장 예정일		-
13. 이사회결의일 (결정일)		주주총회 결의일: 2019년 6월 3일
- 사외이사 참석 여부	참석 (명)	-
	불참 (명)	-
- 감사 (감사위원) 참석 여부		-
14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		-
15. 제출을 면제 받은 경우 그 사유		-
16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	-
1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13. '이사회결의일(결정일)'은 당사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건 신주발행을 승인한 2019년 6월 3일자 주주총회 개최일을 의미함

【제3자배정 근거, 목적 등】

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	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
<p>정관 제9조 제3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제(2)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3.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그 고객, 외국인투자자 또는 국내에 소재한 그 자회사, 또는 국내 기관투자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함.</p>

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

제3자배정 대상자	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선정경위	증자결정 전후 6개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	배정주식(주)	비고
Topor & Co. Limited	본인	대주주	없음	17 주	